안보포커스 2017-12

안보통일센터

# UN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75호』: 평가 및 제언

2017. 9. 12

안보포커스
SECURITY FOCUS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THE YEOUIDO INSTITUTE

# 1. 개 요

## ❑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호》 만장일치 채택(9.11, 현지시간)

- 안보리, 북한의 제6차 핵실험(9.4)에 대해 기존 대북제재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한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

- 이번 결의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718호》(2006년) 이후 9번째
  ※ 北 대포동 2호 발사를 규탄하며 채택한 '권고적 성격'의 《대북제재결의 1695호》 포함時 10번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일지]**

| | |
|---|---|
| **2006.7.15** (美 현지시간) | 안보리, 북한 도발(대포동2호 발사)을 규탄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의 북한 이전 금지를 유엔회원국에 요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결의 1695호*** 만장일치 채택 |
| **10.14** | 안보리, 북한의 1차 핵실험 감행을 규탄하고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 만장일치 채택 |
| **2009.6.12** | 안보리, 5월25일 2차 핵실험 감행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전문가 패널 구성 등 강경한 제재를 담은 **결의 1874호** 만장일치 채택 |
| **2013.1.22** | 안보리, 2012년 12월 북한의 로켓 발사 감행을 규탄하고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추가, 대북제재 대상을 확대·강화한 **결의 2087호** 만장일치 채택 |
| **3.7** | 안보리, 3차 핵실험 등 관련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결의 2094호** 채택 |
| **2016.3.2** | 안보리,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응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만장일치 채택 |
| **11.30** | 안보리,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 2321호** 만장일치 채택 |
| **2017.6.2** | 안보리,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 기관 4곳과 개인 14명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 2356호** 만장일치 채택 |
| **8.5** | 북한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 주력 수출품 석탄,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전면금지,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 중단 |
| **9.11** | 제6차 핵실험 대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만장일치 채택. 원유공급 年 400만 배럴로 동결, 정유제품 절반에 가까운 200만 배럴로 제한 등 '유류 첫 제재' 및 북한산 섬유제품 해외수출 전면금지 |

## ❑ 《대북제재결의 2375호》의 주요 내용

| 유엔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촉구한 기존 결의내용 거듭 확인 | |
|---|---|
| **유류공급 제한** | • 정유제품<br>올 4분기 50만 배럴, 내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br>※ 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양의 55% 감축 전망<br>• 원유<br>결의안 채택시점의 **現수준 유지**<br>※ 現 원유 공급량 400만 배럴로 추산<br>•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1]의 **대북 수출 전면금지** |
| **제재대상 추가** | • 개인 1명, 단체(노동당 소속) 3개 추가<br>개인 : 노동당 군사위원 **박영식(인민무력상)**<br>단체 : **黨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br>⇒ 개인은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단체는 자산동결 |
| **해상 검색·차단** | • **금지품목 적재 의심 선박 기국 동의下 공해上 검색** 가능<br>• 不동의時 해당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br>• 거부時 해당선박을 자산동결대상으로 지정<br>•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을 이용한 물품 이전 금지** |
| **북한 해외노동자 제한** | •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br>단, 결의 채택 이전 서면으로 고용계약 이뤄진 경우 예외<br>• 기존 노동자는 기간 만료時 추가 허용 不可 |
| **북한 섬유제품 수출금지** | • **북한 섬유제품 수출 금지**<br>• 모든 직물·의류 완제품/부분품 수출 금지 |
| **북한과 합작사업 전면금지** | • **북한과 합작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금지**<br>• 기존 합작 사업체는 120일 내 폐쇄 |

## ❑ 결의안 주도한 미국, 북한에 협상의 여지 열어둠

- 헤일리 유엔주재 美대사,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 않았다,”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나라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입장을 시사

-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강력한 연대에 따른 합의의 결과물임을 강조

1) 콘덴세이트(condensate):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 2. 의 의

### ❑ 결의안의 신속한 채택 및 중·러의 동참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만에 신속하게 그리고 중·러가 동참한 만장일치의 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

- 특히, 중국은 유류공급 제한과 북한産 섬유제품의 전면금수 등 북한이 민감하게 느끼는 조치들을 수용, 북한에게 강한 불만 표출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원유공급 전면중단 및 김정은에 대한 직접 제재가 포함됐던 미국의 초강력 제재가 중·러의 반발로 후퇴했음에도, 2371호와 비교하면 한단계 수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 이번 제재 또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엔 역부족

- 북한은 오히려 미국의 초강력 제재를 피한 데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수위를 더욱 높여갈 여지를 남긴 것은 전략적 의미가 있음

- 주목할 점은 헤일리 美 유엔대사가 북한에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임

※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나라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 “북한이 스스로 평화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全세계 역시 평화 속에 살 수 있을 것”

### ❑ 북한체제의 폐쇄성에도 불구, 향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 북한의 폐쇄적 경제체제로 인하여 대북제재조치들의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그다지 커지 않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 북한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

-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설령 북한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다 해도 제재조치가 해제되고 또 북한과 실질적 교류협력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

- 특히, 안보리 대북제재조치와 별개로 미국의 '북한·이란·러시아 제재법안'(8.2)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타격은 지속될 수밖에 없음

**[미국의 '북한.이란.러시아 제재법안']**(8.2)

- ■ 원유석유제품 北 유입 봉쇄
- ■ 北 노동자 해외 고용 금지
- ■ 북한과 상품거래(온.오프라인) 금지
- ■ 北 도박사이트 차단
- ■ 北선박과 유엔의 對北제재 거부한 국가들의 선박 美 영해 운항 금지

## ❑ 對北 유류제재 계기 마련

- 북한의 연간 총 유류 공급분 8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하면 약 30%(250만 배럴)의 감축 효과

※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유류제품은 원유 400만 배럴, 정유제품 450만 배럴 등 연간 850만 배럴로 추정

- 북한 공급 유류분이 목표치의 75%, 90%, 95% 도달時 유엔회원국들에 공지 의무를 부과, 기존 제재결의안의 북한産 석탄 수입에 대한 단계적 보고 의무를 부여한 다음, 최종적으로 禁輸조치를 취한 것과 비슷한 접근

-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 밀수업자들이 북한에 석유와 필수품을 몰래 공급하면서 중국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것임

※ 9.7 한러정상회담에서 文대통령의 대북 원유 수출 중단 요청을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사실상 거절

## ❑ 북한의 자금줄 차단 강화

- 《결의 2371호》로 석탄·철·철광석·납·납광석과 해산물의 수출을 차단한 데 이어 年 8억 달러 차단 효과가 추정되는 주력수출품 섬유와 의류제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 90% 이상 차단 효과

※ 광물과 해산물, 섬유제품 수출 차단 등으로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

- 북한과의 합작사업체 설립·유지·운영 금지 및 기존 합작사업체의 120일 이내 폐쇄를 포함, 북한의 자금줄 차단 강화

- 《2371호》의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 송출 금지에 이어, 이번 결의에서 해외노동자 고용계약기간 만료를 통해 해외근로자 자연 감소를 유도, 年 2억 달러의 차단 효과

※ 현재 5~6만여명의 북한노동자들이 40여개국에서 외화벌이 추정

## ❑ 黨 핵심조직 제재대상 추가, 김정은에 대한 제재와 압박 강화

- 이번 결의안에 김정은·김여정 남매를 직접 제재대상에 지명하지 않고, 김정은의 黨 중앙군사위와 조직지도부 및 김여정의 선전선동부 겨냥을 통해 경고와 압박의 메시지를 보냄

- 박영식 인민무력상[2]: 북한의 핵·미사일 고발에 관여한 핵심인사로 작년 3월 미국의 독자 제재대상 명단에 올랐으나, 유엔안보리가 너무 늦게 제재대상으로 추가했다는 지적

2) 김정은체제 들어 승승장구한 인물로 2015년 5월 북한군 서열 3위인 인민무력상으로 일약 승진했으며, 작년 6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무위원회에 입성

- 당 중앙군사위원회[3]: 김정은체제 들어 북한군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부활, 북한군을 움직이는 고위간부들이 망라돼 있을 뿐 아니라 김정은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음

-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와 함께 당 중앙위원회의 양대 핵심부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특히 북한정권의 모든 인사권을 장악, 조직지도부 수장은 사실상 김정은

- 선전선동부: 金씨 일가 우상화 선전과 김정은체제 충성 선동 역할. 형식적 수장은 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이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으로 알려져 있음

3) 9.9일 개최된 6차 핵실험 기여자들을 위한 축하연회도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

## 3. 제 언

❑ **대북제재 적극 동참과 함께 북핵·미사일 대비전력 확충 촉구**

- 전술핵무기 재배치
-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인근지역 상시 순환배치
- PAC-3(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조기 추진
- 北 SLBM에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전력화 추진 등

❑ **국회內 '북핵대책 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 '한반도 핵균형'을 위한 북핵 대응수단을 신속 논의·도출하기 위해 국회內 '상설' 특위 구성을 정부·여당에 강력 촉구

❑ **당·국회 차원의 의원외교 활성화를 통해 대북제재 동참 유도**

- 당과 국회 차원에서 미·일·중·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의원외교를 적극 활용, 대북제재조치의 빈틈없는 시행에 적극 동참 유도

❑ **對중·러 '핵안전'을 명분으로 북핵문제 해결 적극 동참 촉구**

- 중국은 북핵문제를 '핵안보'가 아니라 '핵안전'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감안, 북한發 핵사고 공동 대비를 명분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 설득

  ※ 중국은 북한 '긴급사태'를 북한정권의 급격한 변동과 핵사고로 규정하고 있음(2013년 中共黨측 인사)

- 러시아 또한 체르노빌사태에서 보듯 핵사고에 민감하므로 핵안전 협력의 틀 속에서 북핵 접근 유도

- 아울러, 러시아의 對北 원유수출 중단 요청 지속 촉구

❑ **대북제재의 지속을 '常數'로 간주, 黨의 대북·통일 정책방향 정리**

- 만약 극적으로 북핵·미사일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 해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당의 대북·통일정책의 구상이 필요

※ 文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평화체제 전환' 등의 구상은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실천의 탄력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특히, 黨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에 입각한 대북·안보·통일 관련 기조 및 정책방향의 정리 시급